

대이리군립공원 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

대이리군립공원 관람객의 안전관리, 화재예방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대금굴 내부에 CCTV를 추가 설치함에 있어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,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.

2024년 5월 20일

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(인)



1. 행정예고 및 설치 목적

- 대이리군립공원 관람객의 안전관리, 화재예방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CCTV를 설치·운영함에 있어 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.

2. 관련근거

-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제한)
-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)
-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·운영 지침
-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

3. 공고방법 : 삼척시청 홈페이지(<http://www.samcheok.go.kr>)

4. 행정예고(공고)기간 : 2024. 5. 20. ~ 2024. 6. 9.(20일간)

5. 설치장소

설치장소	설치대수			촬영 시간	비고
	총	실내	실외		
합계	3	3	0		
대금굴 내부		3	0	24시간	신규3

6. 의견제출

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내에 다음과 같이 의견을 작성하시어 직접방문, 우편, FAX 등의 방법으로 삼척시 대이동굴관광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제출기한 : 2024. 5. 20. ~ 2024. 6. 9. 까지(20일간)

나. 제출방법 : 방문제출, 우편, 팩스 등 (우편의 경우기간 내 도달하여야 함)

다. 제출서식 : 붙임 참조

라. 제출내용 :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), 주소, 생년월일
전화번호, 의견내용

※ 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.

마. 제출 및 문의처 :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환선로 800

삼척시 대이동굴관광센터 (☎033-571-2813, FAX 033-570-4194)

【 별지서식 】

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				
사 업 명	대이리군립공원 CCTV 설치			
의견 제출자	성 명 (개인/단체)		전화번호	
	주 소			
설치예정위치	검토의견 (의견제출 내용)			
대이리군립공원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				
2024년 월 일				
제 출 자 : (서명 또는 인)				
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귀하				